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6월 27일, 정부

나. 회부일자 : 2024년 6월 2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 8. 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2024. 8. 28.) 상정, 축조심사, 의결

(원안가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 9. 5)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정부)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하여 부가금을 징수하는 규정이 골프장 부가금 납부의무자를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7헌가21, 2019. 12. 27. 결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전완희)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재원에서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제외하고, 부가금 징수에 대한 세부 규정 및 관련 과태료 규정 등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법 제20조제1항제3호 삭제 등).

[개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기금의 조성) ① 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기금의 조성) ①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u>골프장(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u>	<u><삭 제></u>
4. ~ 8. (생략)	4. ~ 8.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부가금의 징수) ① <u>계정관리기관이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가금을 징수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u>	<u><삭 제></u>
② <u>제1항에 따른 부가금은 골프장 시설 입장료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u>	
③ <u>계정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에게 그</u>	

승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통보받은 해당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는 그 시설 이용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가금을 수납하여 계정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부가금의 징수 대상이 되는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가 수납한 부가금을 내는 때에는 부가금 수납부사본 등 부가금 수납과 관련된 서류를 계정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부가금의 징수 방법, 납부 시기 및 부가금 수납 관련 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가금 납부 관련 서류를 계정관리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생략)

③ ~ ⑤ (생략)

**법률 제20193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55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삭 제>

2.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법률 제20193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5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생 략) 2. <u>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가금 납부 관련 서류를 계정관리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u> 3. (생 략) ③ ~ ⑤ (생 략) 법률 제20413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55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 략) 5. <u>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가금 납부 관련 서류를 계정관리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u> 6. (생 략) ③ ~ ⑤ (생 략)	1. (현행과 같음) <u><삭 제></u> 3.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법률 제20413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5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4. (현행과 같음) <u><삭 제></u> 6.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골프장 등 체육시설에 대해 일괄 부과되었던 체육시설 입장료 부가금이 2000. 1. 12.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법률 제6131호)을 통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입장료 부가금만 존속하게 되었음¹⁾²⁾.

이는 당시 법 개정이 국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등의 일반 체육시설은 중산층 이하 국민들이 주로 이용하지만,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고소득 계층이 주로 이용한다는 판단에 기초하였기 때문이다.³⁾

그러나 2019년 1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 부가금에 대해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을 통한 ‘국민체육의 진흥’이라는 골프장 부가금의 부과 목적과 부가금 납부의무자 사이에 특별히 객관적으로

1) 조문대비표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6013호, 1999. 8. 31, 일부개정]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6131호, 2000. 1. 12, 일부개정]
제19조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운동장·체육관·수영장·골프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제19조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골프장(會員制로 운영하는 골프場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2) 입장료에 따라 1,000원~3,000원의 범위 내에서 부가금 징수, 징수 수수료 4.95%를 제외한 부가금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납부

3)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6131호)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수많은 체육시설 중 회원제 골프장이 이용자에게만 국민체육진흥계정 조성을 위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되어 일반국민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초래하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위헌결정을 내림(2017헌가21).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고,⁴⁾⁵⁾ 위헌 결정된 조항에 대해서는 이후 국회에서 명시적으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임.⁶⁾

따라서 동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법률 정비 차원에서 목적성이 인정되는바 필요한 입법 조치라고 보임.

참고로, 제21대 국회에서 동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⁷⁾

4) 「헌법재판소법」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5)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이후인 2020년부터는 부가금(연간 약 400억원 수준) 징수는 종료되었고, 체납금 회수잔액(2024년 국민체육진흥기금 계획안 기준 약 4억원)만 징수 중

6)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국회의 별도 입법 없이도 위헌 상태가 해소되는 것이지만, 법률 정비 차원에서 명시적으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제21대 국회 위헌·헌법불합치 법률 정비 현황’, 국회 법제실, p.5).

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15호, 정부 제출)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임오경)

원안가결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일부 체계·자구 수정이 있었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

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 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55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법률 제20413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55조제2항제5호의 개정 규정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3호를 삭제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6조의 제목 “(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 및 부가금의 면제)”를 “(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의 면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기금의 조성) ① 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기금의 조성) ① ----- -----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u>골프장(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u>	<삭 제>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부가금의 징수) ① <u>계정관리기관이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가금을 징수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u>	<삭 제>
② <u>제1항에 따른 부가금은 골프장 시설 입장료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u>	
③ <u>계정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에게 그 승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통보받은 해당 골프장 시설의 운</u>	

영자는 그 시설 이용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가금을 수납하여 계정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부가금의 징수 대상이 되는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가 수납한 부가금을 내는 때에는 부가금 수납부 사본 등 부가금 수납과 관련된 서류를 계정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부가금의 징수 방법, 납부 시기 및 부가금 수납 관련 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가금 납부 관련 서류를 계정관리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생략)

③ ~ ⑤ (생략)

제5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삭제>

3.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법률 제20413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55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략) 5. <u>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4</u> <u>항을 위반하여 부가금 납부</u> <u>관련 서류를 계정관리기관에</u> <u>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u> <u>로 제출한 자</u> 6. (생략) ③ ~ ⑤ (생략)	법률 제20413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5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4. (현행과 같음) <u><삭 제></u> 6.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	---